

『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11월 15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12월 23일

제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(2003. 11. 21) 상정, 질의, 토론

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해 운

나. 제안이유

- 2000년2월18일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지하공동구의 위·수탁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도시내 지하공동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공동구 수용시설(제4조)
 - 전력용 케이블(한국전력공사 구미지점)
 - 통신용 케이블(한국통신)
 - 상수도 배수관(상하수도 사업소)
-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·운영(제9조)
 -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공동구관리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- . 공동구 유지관련기관의 공무원(수탁기관 소속 임·직원 포함)
- . 관할소방서 소속 공무원
- . 공동구 유지관리 기관의 소속 임·직원
- .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.
- 공동구의 관리위탁(제10조)
 - 시장은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9조4항에 의하여 전기, 토목, 기계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된 전문관리업체 또는 구미시설관리공단(이하 "관리업체"라 함)에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- 점검(제11조)
 - 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,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록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. 수시점검(내부시설 매일 1회이상, 외부시설 주 1회이상)
 - . 정기점검(1년 1회이상)
 - . 특별점검(장마등 재해발생 우려가있을시)

라. 참고사항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, 동법시행령 제39조
- 국무조정실 점검시 지자체 조례정비 지시(2000. 4.)
- 경상북도 합동점검 개선대책 추진지시(2003. 4. 22.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개정조례로서
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
조례로 정하는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
- 구미시설관리공단의 설치에 따른 공동구의 위·수탁관리와 운영상
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는 것으로서
-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구내의 수용시설,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
관한 사항, 공동구의 관리위탁 및 안전점검 등으로서, 13조 부칙2조로
구성되어 있음.

- 지하공동구는 전력.통신케이블 및 상수도관을 수용하는 중요한 산업기반 시설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.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